

## 2015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중소기업청장

###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 모집규모 : 603명 내외

지원분야	대학 수	모집규모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16개	297명 내외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12개	306명 내외

(참고)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공간이 필요한 창업자에게 추천)

※ 지원분야 및 대학선택은 신청자 자율이며,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6개 대학)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2개 대학)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	소재지
건국대	18명	서울	강원대	27명	강원
경성대	15명	부산	경기대	24명	수원
국민대	21명	서울	경일대	24명	경북
단국대	18명	용인	계명대	24명	대구
동국대	24명	서울	동아대	27명	부산
부경대	18명	부산	연세대	24명	서울
순천대	15명	순천	원광대	21명	익산
순천향대	21명	아산	인덕대	30명	서울
영남이공대	21명	대구	인천대	27명	인천
전북대	18명	전주	전주대	30명	전주
제주대	15명	제주	한남대	27명	대전
조선대	18명	광주	호서대	21명	아산
충북대	21명	청주	/		
한국교통대	18명	충주			
한국산업기술대	15명	시흥			
한밭대	21명	대전			

\* 상기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금액 및 내용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의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를 지원

####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지원기간
최대 7천만원 (평균 4.5천만원 내외)	협약 후 10개월 이내(~'16.3.31)

####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50백만원 (100%)	35백만원 (70%)	5백만원 (10%)	10백만원 (20%)

**지원내용** (일반형  거점형)

구 분		지원내용	
거점형	일반형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재료·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 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창업준비공간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예비)창업자 당 13m <sup>2</sup> 내외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 <input type="checkbox"/> 경영 멘토링 지원	100시간 이상

※ 세부 지원내용은 창업선도대학별로 상이

## 2. 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14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2 참고) (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5.5.8.을 초과하는 경우

- \* 단, '15.5.8.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가능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3 참고)

##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5년 4월 6일(월) ~ 4월 24일(금),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창업넷 가입 및 사업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신청 방법 :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 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추후 변경 불가)

\* 창업넷 홈페이지-창업지원-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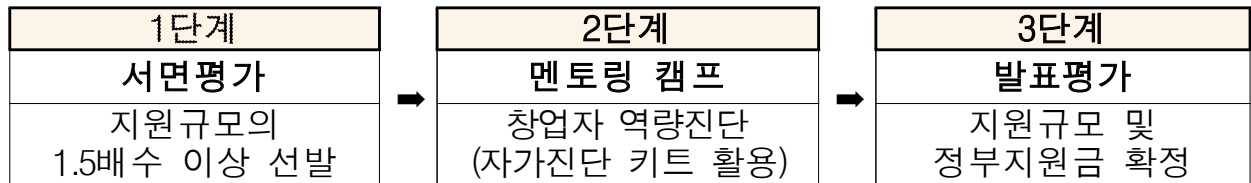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 회원) 및 로그인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진행절차



\* 1단계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이 2단계, 3단계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1단계)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 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100점 만점, 가점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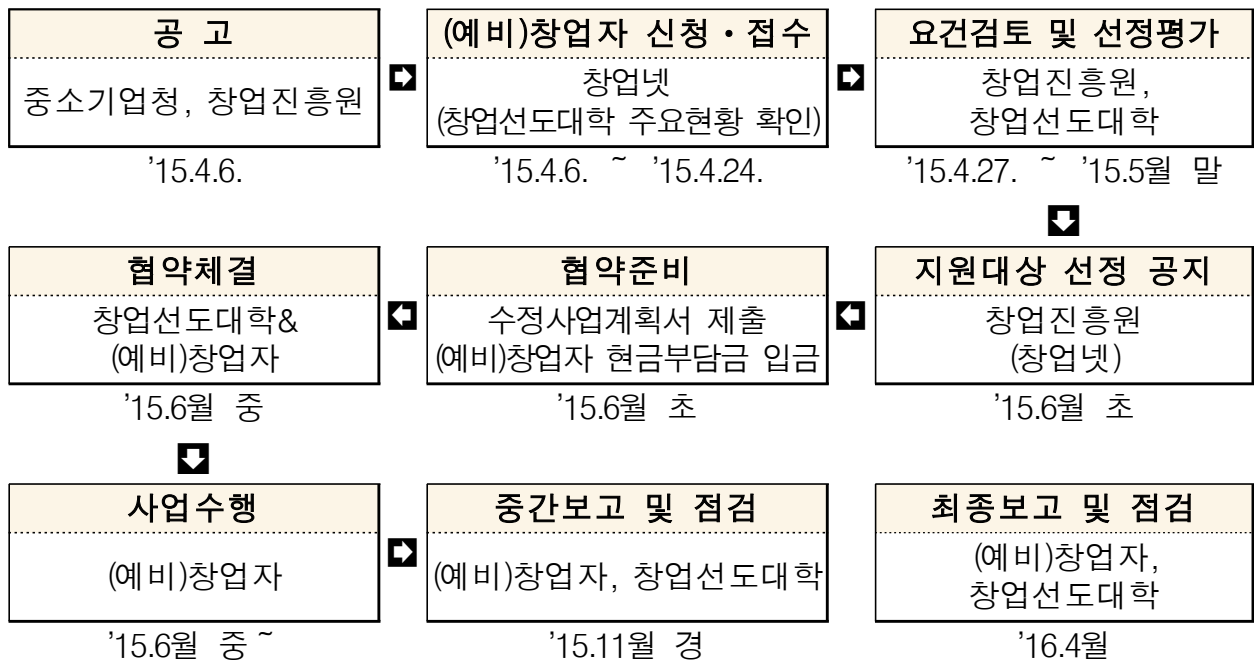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점수	비고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 2) 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총괄멘토의 지원을 받은 자 3)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입상자	각 0.5점	최대 2점
1)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 교육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제외	각 1점	

\* 가점은 1단계 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② (2단계)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 ③ (3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과 (예비) 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④ (최종선정)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타 기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 (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15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 (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음
- '스마트창업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업터)' 연계를 통해 자금을 수혜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수혜금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15년도 타 기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 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 불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기준 및 창업 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문의처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붙임 4】 창업선도대학별 문의처 참고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042-480-4352~9, 4386,9)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콜센터(1357-3)



【붙임 1】

## 지식서비스분야 대상업종

※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할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를 인건비로 계상 가능(세부 사항은 동 사업 사업비관리기준 참고)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b>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b>	전자금융서비스	<b>디자인 서비스</b>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b>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b>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b>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b>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b>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b>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시험/검사/분석기법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b>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b>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이외인 경우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RFID/USN	RFID/USN 서비스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서버기술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가상현실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콘텐츠 창작 기획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전기전자	반도체소재 및 시스템	설계 Tool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IIS/텔레메딕스	IIS 응용서비스	
				텔레메딕스 응용서비스	
바이오·의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사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관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시스템	의료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의료정보표준화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에너지·자원	전력IT	수요예측관리기술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신원전 기술		

【붙임 2】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 ~ '14년 (지원 (신청) 제외 대상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창업기획사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15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해외진출 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스마트창작터(창업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 기타 同사업과 신청기간이 겹치는 사업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참고

【붙임 4】

## 창업선도대학별 문의처

※ 창업선도대학별 상세정보는 창업넷(<http://www.statup.go.kr> → ‘창업지원’ → ‘사업화’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6개)

연번	대학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1	건국대	서울	이정미	02-450-3347
			이지은	02-450-4287
2	경성대	부산	최지형	051-663-5901 ~ 2
3	국민대	서울	김성일	02-910-5683
4	단국대	경기(용인)	이현경	031-8005-2863
			진선정	031-8005-2866
5	동국대	서울	정경희	02-2088-3737(내선 #112)
			최선미	02-2088-3737(내선 #115)
6	부경대	부산	이희영	051-629-5230
7	순천대	전남(순천)	김선구	061-750-5434
			오주영	061-750-5437
8	순천향대	충남(아산)	엄상윤	041-530-1622
			서지현	041-530-4836
			김범현	041-530-4830
9	영남이공대	대구	이경은	053-650-9474
			양주영	053-650-9478
10	전북대	전북(전주)	김성종	063-270-4086
			임용환	063-270-3921
11	제주대	제주	백은진	064-754-4431
			김상현	064-754-2066
12	조선대	광주	정금남	062-230-7989
			김유리	062-230-7740
13	충북대	충북(청주)	전수범	043-261-3721
			곽의천	043-249-1785
14	한밭대	대전	고준빈	042-821-1605
15	한국교통대	충북(충주)	석지원	043-841-5003
16	한국산업기술대	경기(시흥)	이범수	031-8041-0988
			허보람	031-8041-0985
			최정순	031-8041-0986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2개)

연번	대학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1	강원대	강원	박희성	033-250-8971
			박제완	033-250-8974
2	경기대	경기(수원)	전신아	031-249-8665
			장미정	031-249-8664
3	경일대	경북(경산)	박종배	053-600-4451
			김성환	053-600-4471
4	계명대	대구	최대우	053-620-2039
			박혜경	053-620-2045
5	동아대	부산	류정은	051-200-6452
			최수연	051-200-6464
			이세미	051-200-6365
6	연세대	서울	모소현	02-2123-4848
			엄현아	02-2123-4310
7	원광대	전북(익산)	김태호	063-850-7460
			김두현	063-850-7474
8	인덕대	서울	하희주	02-950-7095
			구본아	02-950-7098
9	인천대	인천	유다올	032-835-9670
			김수진	032-835-9643
10	전주대	전북(전주)	이종관	063-220-2844
			오준교	063-220-2850
			이진태	063-220-2845
11	한남대	대전	안경진	042-629-8565
			장윤철	042-629-8519
12	호서대	충남(아산)	정재호	041-540-9928
			이현수	041-540-9933